

1. **적용 범위:**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 인도는 본 판매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추가적으로 관련 법률만이 적용된다. 구매자의 일반 조건 등 이와 다른 조건은 당사가 서면 양식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의 제품 인도, 서비스 이행 또는 대금 수령은 본 판매조건 및 관련 법률과 다른 조건에 대한 당사의 수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제외, 계약:** 당사의 제안은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계약은 당사가 서면으로 주문 확인을 제공하거나 당사가 주문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3. **양식:**
  - 3.1 본 판매조건의 목적식, (a) "서면"은 텍스트 형식(이메일, 팩스, 컴퓨터로 작성된 서신 및 전신 포함)을 의미하며, (b) "서면 양식"은 수기로 서명한 문서를 의미한다. 본 제3.1조를 포함하여 본 판매조건의 수정 또는 보충, 계약의 해지 또는 상호 합의된 취소는 서면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2 기타 진술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4. **가격:**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의 가격은 작업 외 견적가격이며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청구일에 유효한 법정 세율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 상계:**
    - 5.1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구매자가 당사에 지급하는 대금은 인도일 또는 서비스 이행일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5.2 구매자에 의한 상계는 다툼이 없거나 관할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인정된 청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6. **이행지, 선적지:**
    - 6.1 인도 또는 이행 장소는 당사의 생산 또는 보관 장소로 한다.
    - 6.2 선적이 포함되기로 합의된 경우, 당사는 구매자의 위험부담 하에 제품을 선적한다. 또한, 당사는 선적 방식, 선적 경로 및 운송인을 결정한다.
  7. **부분 인도 및 이행:** 부분 인도 및 이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8. **인도일정, 지연:**
    - 8.1 당사가 합의된 인도일정 또는 이행일정 또는 기타 계약상 의무를 적시에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당사에게 합리적인 기간의 추가 인도 또는 이행기간을 3주 이상으로 서면으로 제공한다.
    - 8.2 추가 인도 또는 이행기간의 만료일까지 인도 또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사유로 구매자가 인도 대신 계약을 철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는 먼저 서면으로 당사에 인도 또는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인도 대신 계약 철회 및/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인도/이행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9. **운송보험:** 당사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구매자의 비용으로 제품 청구금액 이상의 적절한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0. **소유권 보유:**
    - 10.1 판매된 제품은 구매자와의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구매자에 대한 당사의 청구가 모두 충족될 때까지 당사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 10.2 구매자가 당사 제품을 가공한 경우, 당사의 소유권은 신제품까지 확장된다. 구매자가 당사 제품을 타인의 제품과 가공, 결합 또는 혼합한 경우, 당사는 가공, 결합 또는 혼합된 다른 제품의 총 가액에 대하여 당사 제품의 청구 가액을 나타내는 신제품 부분에 비례하여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 10.3 당사 제품이 구매자 또는 제3자의 제품과 결합 또는 혼합되는 경우, 구매자는 신제품에 대한 권리를 당사에 양도한다. 구매자가 당사 제품을 제3자의 제품과 결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당사에 양도한다.
    - 10.4 구매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당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한 판매/재판매 시 구매자가 사전에 구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해당 제품/신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구매자는 고객과 본 판매조건에 명시된 조건과 동일한 소유권 유보 약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재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과 상기 소유권 유보 약정에 따른 권리를 당사에 양도한다.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는 고객에게 그러한 권리 양도에 대해 알리고 당사의 권리 집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당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판매/재판매로부터 발생한 청구로부터 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
    - 10.5 당사가 제공된 담보권이 당사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담보권을 해제한다. 당사의 소유권 유보권 행사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1. **불가항력:** 불가항력 조건은 당사의 인도 및 이행 의무를 면제한다. 전력 또는 원자재 공급 부족, 노동쟁의, 정부 명령, 운송 장애 또는 당사 운영의 장애 시 동일한 면제가 적용된다. 이는 당사의 하위공급자 또는 계열회사(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 제12호 이하에 정의됨)가 전술한 사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2. **제품 정보:**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 제품의 계약상 특성은 오로지 현재 버전의 당사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 내구성, 기타 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당사가 서면 양식으로 동의하고 명시한 경우에만 보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품, 장비, 공장, 응용, 공정 및 공정 지침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정보는 응용 엔지니어링 분야의 연구 및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당사는 당사가 아는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당사가 해당 정보를 수정 및 추가 개발할 권리를 전제로 하고, 해당 정보는 구속력이 없다. 전술한 사항은 구매자가 의도한 용도에 당사 제품이 적합하지 확인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용된다.
  13. **청구:** 모든 청구, 특히 하자 및 인도 미충족에 관한 청구는 제품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 잠재적 하자의 경우 하자가 발견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해당 기간 또는 합의된 양식으로 당사에 청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위 불이행 통지에 언급된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인도되거나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락하는 경우, 구매자는 인도 당시 서면으로 해당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만 해당 하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4. **하자 발생 시 구매자의 권리:**

- 14.1 구매자는 계약상 합의된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를 시정할 권리가 있다. 인도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청구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는 그러한 교체 또는 수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항상 부여받는다. 당사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하자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각 구매대금을 조정하거나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
- 14.2 아울러, 구매자는 법률상 손해배상 및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히 하자면, 본 제14.2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에 제15조가 적용된다.
- 14.3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당사에 대한 법규에 따른 클레임은, 법규상 권리를 초과하는 조항에 대하여 구매자가 고객과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15. **책임:**
  - 15.1 당사, 당사의 법적 대표자, 직원 및 당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는 계약 및/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의무 위반에 기반하지는 여부와 불문하고,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i) 당사, 당사의 법적 대표자, 직원 또는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ii) 당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계약의 본질을 위반하고 구매자가 해당 의무(본질적 의무)의 이행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의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본질적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은 100,000유로 또는 10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청구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성격의 계약에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된다.
  - 15.2 전술한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은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 한국의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의무적 책임 또는 기타 의무적 책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기한:** 구매자의 하자담보, 손해배상 또는 비용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기한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멸한다. 다만, 건축에 적절히 사용되어 건물의 하자를 초래한 제품과 관련된 하자청구권은 그 기한을 4년으로 한다. 당사가 고의적으로 행위하였거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한국의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의무적 책임 또는 기타 의무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기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7. **법령 준수, 수출 및 관세 규정, 면세, 해제:**
    - 17.1 서면 양식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제품의 수입, 운송, 보관, 사용, 유통 및 수출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구매자는 (i) 생물무기, 화학무기 또는 핵무기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ii) 의약품의 불법 제조를 위하여, (iii) 통상금지를 위반하여, (iv) 법적 등록 또는 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또는 (v)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떠한 제품도 사용,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상기 의무 위반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청구, 손해, 비용, 경비, 책임, 손실, 청구 또는 절차로부터 당사를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아니한다.
    - 17.2 인도/이행 시점에 당사의 제품/서비스 수출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규제상 승인 요건이 적용되고, 그러한 수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관련 당국의 승인이 지연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7.3 또한, 인도 시점에 거래 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제품 등록 의무가 적용되고 인도/이행 시점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17.4 구매제품이 특허원산지에 의해 관세특혜 대상인 경우, 당사는 서명 없이 모든 특허원산지 신고서(공급자 신고서, 송장 신고서)를 자동 생성하여 발급할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는 (EU) Regulation 2015/2447에 명시된 당사의 의무에 따라 특허 원산지신고서가 구매자에게 발급될 것임을 확인한다.
  18. **관할지:** 본 판매조건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따른다.
  19. **관련 법률:** 구매자와의 계약 및 법률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0. **거래 조건:** 인코텀스에 따라 거래조건이 합의된 경우, 인코텀스 2020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된다.
  21. **가분성:** 본 판매조건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나머지 조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언어:** 본 판매조건의 영문본과 국문본은 모두 유효한 정보이다. 영문본과 국문본이 상충되거나 그 의미가 불확실한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